보장범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시병, 일시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제외)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는?

-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차 소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전부가 무보험 지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에 따름

익사사고란?

•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의료사고는?

•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란?

• 만 12세 이하인 진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24년 진안군민이라면 자동가입으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진안군민 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폭발·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해주는 제도

• 보장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 1. 1. ~ 2024. 12. 31. (1년)

•보험료

진안군 부담 (대상자 별도 가입하지 않음)

• 청구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접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험금 신청문의**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기타문의

- 진안군 안전재난과 ☎ 063) 430-2495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장항목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 보험가입 혜택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 연 재 해 상 해 사 망	일사병, 열사병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	자 연 재 해 상 해 후 유 장 해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3	온 열 질 환 진 단 비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4	개 인 형 이 동 장 치 상 해 사 망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개인형이동자치상해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 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6	전 세 버 스 이 용 중 상 해 사 망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7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8	사 회 재 난 사 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9	사 회 재 난 상 해 후 유 장 해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 고 상 해 사 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11	폭 발 · 화 재 · 붕 괴 · 산 사 태 사 고 상 해 후 유 장 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1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6	강 도 상 해 사 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7	강 도 상 해 후 유 장 해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8	익 사 사 고 사 망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19	의 료 사 고 법 률 비 용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1	농 기 계 사 고 상 해 사 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2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23	가 스 상 해 사 고 사 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24	가스 상해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25	자 전 거 상 해 사 망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26	자 전 거 상 해 후 유 장 해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2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2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9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내용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